

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설립목적 및 적용범위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 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임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에 대한 사항 (안 제14조 ~제15조)
- 바. 공유재산 무상사용 (안 제16조)
- 사. 공무원의 파견 (안 제1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구미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2.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
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
5.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
6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
7.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·운영 관리

8.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·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시는 재단의 설립,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목적과 명칭
2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3. 자산,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4. 이사·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 운영
7. 사업에 관한 사항
8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9.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,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

바에 의한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·사무를 맡아 처리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 구성 및 운영)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11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

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연도)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4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② 재단은 세입·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
제17조(보고·검사 및 감사)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의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준비)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①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

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

제21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·운영)

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 범위
2. 재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2.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
3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4.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
5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·교류에 관한 업무
6.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,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재산, 운영비 및 인건비, 사업비로 시비 100%로 추계하였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구분	세입	323	818	818	818	818	3,595
	소계(a)	323	818	818	818	818	3,595
세출	○ 기본재산	300	-	-	-	-	300
	○ 인건비	1,411	1,411	1,411	3,295	3,295	10,823
	○ 운영비	654	743	823	1,726	1,742	5,688
	○ 사업비	2,437	2,962	3,435	6,859	6,954	22,647
	소계(b)	4,802	5,116	5,669	11,880	11,991	39,458
□ 총 비용(a-b)		△4,479	△4,298	△4,851	△11,062	△11,173	△35,863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시비	4,479	4,298	4,851	11,062	11,173	35,863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 : 문화예술과 신우성(054-480-6638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4,802	
기본재산	300	· 300,000,000원 × 1식 = 300,000,000원
인 건 비	1,411	· 인건비(대표이사) - 107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107,000,000원 · 인건비(사무국장) - 79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79,000,000원 · 인건비(직원) - 49,000,000원 × 25명 × 1년 = 1,225,000,000원
운 영 비	654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 - 654,000,000원 × 1식 = 654,000,000원
사 업 비	2,437	· 공간운영 사업비 642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경영전략 수립: 60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홍보 및 아카이브: 230,000,000원 · 후원 및 기부금 조성 사업: 50,000,000원 · 문화예술향유기반 확장 사업: 75,000,000원 ·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: 425,000,000원 · 예술-기업 연계지원사업: 130,00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사업: 500,000,000원 · 문화매개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: 40,000,000원 · 시민주도형 문화활동지원 사업: 30,000,000원 ·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: 210,000,000원 · 지역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미래자산화 사업 : 25,000,000원 ·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사업: 20,000,000원

2.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5,116	
인 건 비	1,411	· 인건비(대표이사) - 107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107,000,000원 · 인건비(사무국장) - 79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79,000,000원 · 인건비(직원) - 49,000,000원 × 25명 × 1년 = 1,225,000,000원
운 영 비	743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 - 743,000,000원 × 1식 = 743,000,000원
사 업 비	2,962	· 공간운영 사업비 642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경영전략 수립: 60,000,000원 ·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: 80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홍보 및 아카이브: 100,000,000원 · 후원 및 기부금 조성 사업: 30,000,000원 · 문화예술향유기반 확장 사업: 75,000,000원 ·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: 505,000,000원 · 예술-기업 연계지원사업: 180,00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사업: 500,000,000원 · 문화매개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: 130,000,000원 · 시민문화활동지원 사업: 130,000,000원 ·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: 260,000,000원 · 지역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미래자산화 사업 : 200,000,000원 ·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사업: 70,000,000원

3.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5,669	
인 건 비	1,411	· 인건비(대표이사) - 107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107,000,000원 · 인건비(사무국장) - 79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79,000,000원 · 인건비(직원) - 49,000,000원 × 25명 × 1년 = 1,225,000,000원
운 영 비	823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 - 823,000,000원 × 1식 = 823,000,000원
사 업 비	3,435	· 공간운영 사업비 642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경영전략 수립: 110,000,000원 ·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: 90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홍보 및 아카이브: 100,000,000원 · 후원 및 기부금 조성 사업: 30,000,000원 · 문화예술향유기반 확장 사업: 83,000,000원 ·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: 575,000,000원 · 예술-기업 연계지원사업: 200,00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사업: 630,000,000원 · 문화매개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: 180,000,000원 · 시민문화활동지원 사업: 160,000,000원 ·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: 260,000,000원 · 지역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미래자산화 사업: 180,000,000원 ·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: 125,000,000원 ·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사업: 70,000,000원

4. 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11,880	
인 건 비	3,295	· 인건비(대표이사) - 107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107,000,000원 · 인건비(본부장) - 79,000,000원 × 2명 × 1년 = 158,000,000원 · 인건비(직원 - 62명) - 3,030,000,000원 × 1식 × 1년 = 3,030,000,000원
운 영 비	1,726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 - 1,726,000,000원 × 1식 = 1,726,000,000원
사 업 비	6,859	· 공간운영비 사업비: 3,879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경영전략 수립: 60,000,000원 ·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: 90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홍보 및 아카이브: 110,000,000원 · 후원 및 기부금 조성 사업: 30,000,000원 · 문화예술향유기반 확장 사업: 85,000,000원 ·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: 630,000,000원 · 예술-기업 연계지원사업: 220,00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사업: 655,000,000원 · 문화매개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: 180,000,000원 · 시민문화활동지원 사업: 160,000,000원 ·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: 260,000,000원 · 지역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미래자산화 사업: 180,000,000원 ·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: 250,000,000원 ·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사업: 70,000,000원

5. 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소요비용	산출기초
합 계	11,991	
인 건 비	3,295	· 인건비(대표이사) - 107,000,000원 × 1명 × 1년 = 107,000,000원 · 인건비(본부장) - 79,000,000원 × 2명 × 1년 = 158,000,000원 · 인건비(직원 - 62명) - 3,030,000,000원 × 1식 × 1년 = 3,030,000,000원
운 영 비	1,742	· 관리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소모품비, 임차료 등) - 1,742,000,000원 × 1식 = 1,742,000,000원
사 업 비	6,954	· 공간운영비 사업비: 3,879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경영전략 수립: 80,000,000원 ·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연구: 90,000,000원 · 구미문화재단 홍보 및 아카이브: 110,000,000원 · 후원 및 기부금 조성 사업: 30,000,000원 · 문화예술향유기반 확장 사업: 85,000,000원 ·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: 650,000,000원 · 예술-기업 연계지원사업: 220,000,000원 · 문화예술교육사업: 710,000,000원 · 문화매개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: 180,000,000원 · 시민문화활동지원 사업: 160,000,000원 ·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: 260,000,000원 · 지역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미래자산화 사업: 180,000,000원 · 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: 250,000,000원 ·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사업: 70,000,000원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정 은
	팀 장	심 주 희
	담 당 자	신 우 성 (480-6638)